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69

제출일자 : 2024. 2. 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안 제4조)

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이용료(안 제5조부터 제7조)

마.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안 제11조)

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안 제12조)

아.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재정지원(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24. 1. 5. ~ 2024. 1. 25.) 결과: 의견반영

3) 비용추계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반영(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진행요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놀이터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놀이터의 수탁 운영을 원하는 기관에서 조성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대상	이용기준	이용료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어린이 1인, 1회 이용시	**3,000원**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 추가**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 이용료 3000원은 동반 보호자 포함 금액이며, 보호자는 최대 2인까지 가능 ※ 놀이돌봄서비스 신청아동의 경우 단독 입장 가능(이용료 5,000원)

[별표 2]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1. 감면 대상 및 기준

구 분	대 상	비고
전액 감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8. 어르신(65세 이상) 9.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어린이 10명당 1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2.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
- 다둥이행복카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따른 시설비용

○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시의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추계

○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가칭) 서울형 키즈카페 시흥1동점 세출·세입 예산 추계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및 운영비	-	87,200	104,640	104,640	104,640	401,120
	시설비	380,000	-	-	-	-	380,000
	소계(①)	380,000	87,200	104,640	104,640	104,640	**781,120**
세입	사용료 및 세외수입	-	45,000	54,000	54,000	54,000	207,000
	소계(②)	-	45,000	54,000	54,000	54,000	207,000
□ 총 비용(①-②)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380,000	70,890	85,068	85,068	85,068	**706,094**
구비	-	16,310	19,572	19,572	19,572	75,026
합계	380,000	87,200	104,640	104,640	104,640	**781,120**

5. 덧붙이는 의견 : 시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재원조달시 시비 우선적 확보 노력 필요

6. 작성자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김 종 표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출

○ 서울시 지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준용) 및 운영비(1개소당 월 1,700천원)

○ 시설비 : 서울시 지원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시 m^2당 2,000천원 반영

2. 세입

○ 산출내역

- 조성 2년차 : 15명 × 4회 × 25일 × 10개월 × 3,000원
- 조성 3년차 : 15명 × 4회 × 25일 × 12개월 × 3,000원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